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7호·제8호 신설 등).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의 하한을 높이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도입함(안 제3조의5).
-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며, 「상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1

조).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 기준 형량을 강화함(안 제19조).

II. 검토의견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관련 검토사항(안 제8조의2)

- 개정안은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를 신설하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i)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ii) 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iii)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iv)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제8조의2제1항 신설).

(1) 성착취 추심행위 관련, 성착취 추심행위를 규정한 안 제8조의2 제1항제1호가목은 대부제공자가 대부계약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음란물과 마치 실제처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파일공유 앱’을 활용하여 만든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하여 상환을 독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¹⁾

한편, 2024. 10. 16.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반포할 목적 없이 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음.²⁾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엄벌 취지 및 촬영물을 가공한 편

1) 박진산, (2023.3.19.) 「돈 못갸았다고 ‘딥페이크’ 활용 성착취 추심...“파일공유앱 설치하세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182.html (최종검색일: 2024.12.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집물 역시 성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활용하는 범죄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 ----- ----- ----- ----- ----- ----- ----- -----.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1. ----- ----- -----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가. ----- -----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나. 인신의 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이나 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나. (개정안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2)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의 무효 관련, 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는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³⁾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에게 원본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등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임.

개정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고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 효과로,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과 이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는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 일체를 반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사경제주체간 계약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수 있음.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⁴⁾의 반사회적·불공정 행위 유형과는 성질이 다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 3배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경우 채권자의 원금 반환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자제한법」에서는 해당 법률상 최고이자율(25%)을 초과한 계약에 대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⁵⁾ 개정안에 따라 원금까지 무효가 된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4) (i)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ii) 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iii)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5)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
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